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인재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32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0.

발 의 자:인재근·강민정·고영인

김승남 · 김한정 · 김홍결

남인순 · 노웅래 · 문진석

서영교 · 서영석 · 양경숙

양정숙 • 이규민 • 이장섭

주철현 · 최종유 · 최혜영

의원(18인)

제안이유

성범죄자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함으로써,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에 「아동복 지법」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함(안 제56조제1 항).
- 나. 지자체의 성범죄 경력자의 점검·확인 대상기관에 「아동복지법」

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함(안 제57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,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 봄센터

법률 제17007호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제56조제1항제8호의 아동복지시설,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 께돌봄센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	제56조(아동・청소년 관련기관등
에의 취업제한 등) ① 법원은	에의 취업제한 등) ①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	
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	
죄"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	
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	
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	
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	
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	
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	
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	
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일	
정기간(이하 "취업제한 기간"	
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	
따른 시설・기관 또는 사업장	
(이하 "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	
등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	
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	
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	
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"취	
업제한 명령"이라 한다)을 성	
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	
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	
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	

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 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1. ~ 7. (생략)
- 8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 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 스 수행기관
- 9. ~ 22. (생략)
- ② ~ ⑧ (생 략)

법률 제17007호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- 제57조(성범죄의 경력자 점검· 후인) ①·② (생 략)
 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

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
호의 아동복지시설, 같은 법
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
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
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
9. ~ 2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7007호 아동ㆍ청소년의
성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
제57조(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
확인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

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 검 ·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 2항에 해당하는 아동・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

- 1. ~ 3. (생략)
- 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 기관
- 5. ~ 13. (생략)
- ④ ~ ⑥ (생 략)

	•	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제56조제1항제8호의 아동복 4. 제56조제1항제8호의 아동복 지시설,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다함께돌봄센터
 - 5. ~ 13. (현행과 같음)
 - ④ ~ ⑥ (현행과 같음)